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단체 명시 >■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5318호)

2024. 5.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목 차

I.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단체 명시	. 3
※ 참고자료	9
1.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촉위원 구성현황	 9
2. 광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	10

I. 제안경위

2023년 11월 9일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11월 10일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함을 기본원칙으로 보장하고,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위촉에 있어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지방탄소중립위원회"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 위촉의 경우에도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

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제2기 탄소중립위원 회가 출범했지만,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등 법률에 서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사회계층의 참여가 배제되며 민주적 참여 원칙을 위반한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 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며 이에 대한 법률 위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기본법」이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위원회 등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국가적 비 전으로서 그 과정에서의 부담과 피해가 일부 계층에 전가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함께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핵심가치라고 할 것임.

이에 탄소중립위원회 및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여야 함을 더욱 명확히 하고실질적인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이 민주적 참여를 통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고자 함(안 제15조제5항 등).

III. 검토의견

1.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단체 명시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위촉 시 다양한 사회계층(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후보 추천 단체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및 제22조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의 설치) ① ~ ④ (생	위원회의 설치) ① ~ ④ (현
략)	행과 같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⑤
위촉할 때에는 <u>아동, 청년, 여</u>	<u>다음</u>
<u>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u>	<u>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로부터</u>
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후보를 추천받아 다양한 사회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	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여야
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	
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u>있도록 하여야</u> 한다.	
<u><신 설></u>	1. 아동・청년・여성을 각각

현 행	개 정 안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국적
	규모의 단체
<u><신 설></u>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 전국적 규모의
	산업별 연합단체 및 산업별
	<u>노동조합</u>
<u><신 설></u>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수산업・어
	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
	에 따른 생산자단체
<u><신 설></u>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
	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중견기업, 「소상
	<u>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u>
	소상공인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갖춘 전국적 규모의 단
	<u>체</u>
<u><신 설></u>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
	<u>체</u>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
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② (생 략)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③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	
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u>아동, 청년, 여</u>	<u>다음 각 호에</u>
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	해당하는 단체로부터 후보를
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추천받아 다양한 사회계층의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u>대표성을 반영하여야</u>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u><신 설></u>	1. 아동ㆍ청년ㆍ여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국적
	규모의 단체
<u><신 설></u>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 전국적 규모의
	산업별 연합단체 및 산업별
	<u>노동조합</u>
<u><신 설></u>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현 행	개 정 안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수산업・어
	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
	에 따른 생산자단체
<u> <신 설></u>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
	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중견기업, 「소상
	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갖춘 전국적 규모의 단
	<u>체</u>
<u> <신 설></u>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
	<u>간단체</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1)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녹색

^{1) &#}x27;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 아동, 청년, 여성 등 다 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경우 농업계, 노동계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없고, 시민사회와 여성의 비중이 제1기 205 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참고자료1).

[제1기 및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비교]

	제1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여성	28명	7명
농업계	1명	-
청년	6명	1명
시민사회	10명	2명
노동	1명	-
 산업	12명	1명

자료: 환경부

또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경우 노동계, 농업계,

청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어,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참고자료2).

이에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위촉 시 총연합단체(노동조합, 중소기업, 농업등 생산자단체, 비영리단체) 등의 추천을 받도록 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방향으로 보임.

다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법률에 명시된 단체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의 위촉권이 제한되고, 배제 단체와의 역차별 문제, 추천단체 수 증가에 따른 행정비효율 문제2)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그러나, 현재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구성 현황을 보면 제1기와 비교 시 청년, 노동,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위원 위촉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²⁾ 개정안 제15조제5항 각 호와 개정안 제2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법인이 6,835개(국가통계포털, 2021년 기준), 비영리민간단체가 15,115 개(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2023년 3월 기준)인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추천단체가 과도하게 많아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533

※ 참고자료

1.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촉위원 구성현황

※자료: 환경부

□ 1기 탄중위 : 위원장(1) + 위촉직(78)

※ 중도 사퇴한 위원 포함

구 분	현황	비고
성별비율	· 여성(28명, 35%)	
8515	남성(51명, 65%)	•
연령분포	· 10대(1명), 20대(2명), 30대(7명),	· 청년(19~34세) : 6명
진앙문포	40대(10명), 50대(40명), 60대(19명)	· 평균연령 : 53세
	· 전문가(44명)	
	* 학계 22명, 공공기관 22명	
직능별	· 각계 대표(35명)	
	* 산업계 12명, 시민사회 10명, 청년 4명	
	종교계 4명, 지자체 3명, 노동계 1명, 농업 1명	

□ 2기 탄중위 : 위원장(1) + 위촉직(32)

구 분	현황	비고
성별비율	· 여성(7명, 21%)	
8일미월	남성(26명, 79%)	
여려보ㅠ	· 30대(2명), 40대(4명),	처녀 1명/기스에 구스
연령분포	50대(19명), 60대(8명)	· 청년 1명(김승완 교수)
	· 전문가(27명)	
	* 학계 19명, 공공기관 6명, 로펌 2명	
직능별	· 각계 대표(6명)	
	* 중소기업(2), 시민사회(2),	
	지자체(1), 산업계(1)	

[※] 노동계 대표는 없으나, 한국고용정보원 본부장 선임

2. 광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자료: 환경부

		구	성					민간	현황		
구분	총인 원	정부	민간	학 계	시 민 단 체	노 동 계	농 업 계	청 년	산 업 계	시의원, <i>공</i> 강만 등	기타
서울	40	10	30	13	2			5	2	공공(4)	법조인(2), 컨설팅(1), 학회(1)
부산	50	6	44	13	4			1	11	공공(13), 의원(2)	
대구	15	6	9	5				2	1	공공(1)	
인천	30	8	22	3	2				4	공공(9), 의원(1)	탄중센터(1) 의료계(1) 언론(1)
광주	50	7	43	10	2	2			12	공공(11), 의원(4)	금융(1), 의료계(1)
대전	20	6	14	6	1				1	공공(5), 의원(1)	
울산	27	3	24	1	3		1	4	4	공공(9), 의원(1)	산림조합(1)
세종	20	6	14	3	1			1		공공(7), 의원(2)	
경기	40	15	25	6	6				3	공공(5), 의원(2)	법조인(1), 언론(1) 금융(1)
강원	30	6	24	9	3		1		2	공공(8), 의원(1)	
충북	30	6	24	9	4		1		3	공공(4), 의원(1)	법조인(1), 언론(1)
충남	50	9	41	8	3			5	4	공공(16) 의원(3)	법조인(1), 금융(1)
전북	29	9	20	6	2		1		3	공공(4) 의원(3)	법조(1)
전남	40	15	25	7	3	1		4	2	공공(8)	
경북	24	7	17	4	3				5	공공(2) 의원(2)	산림기술인 (1)
경남	30	8	22	4	4		2	1	1	공공(8), 의원(1)	탄중센터(1)
제주	66	22	44	15	5		3	2	10	공공(8)	예술(1)